#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9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철규・박충권・조정훈

박준태 · 김성원 · 강승규

박성민 • 구자근 • 정희용

김 건 • 유상범 • 이인선

김종양 · 임이자 · 신동욱

정점식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·부품·장비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·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.

그러나,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·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,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 어 특별회계를 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 계로 확대·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자 함(안 제68조).

또한,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기여하고자 함(안 법률 제16859호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## 참고사항

- 가.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096호),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)」(의안번호 제209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- 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##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 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 제목 "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)"를 "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"를 "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"로 한다.

제70조제2항제1호자목 중 "강화"를 "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"로 한다. 법률 제16859호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개 정 안 제68조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 제68조(소재・부품・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의 설치) 소재ㆍ부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 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 계의 설치) -----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 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 · 부품 · 장 ----- 소재·부품·장비 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(이하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특별회계----. 제70조(세입·세출) ① (생 략) 제70조(세입·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 연 • 투자 • 보조 또는 융자 가. ~ 아. (생 략)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그 밖에 소재・부품・장 ----- <u>강화</u> 및 공 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업 급망 안정화---2. ~ 4. (생 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6859호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소재・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|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|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제2조(특별회계의 유효기간) 제68 제2조(특별회계의 유효기간) ---

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	
은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효력	<u>2029년 12월 31일</u>
을 가진다.	<u></u>